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0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시 임대 농기계 사 용 농어민 포함(정희용의원안)	3

I. 개요

1. 정회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0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회용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26.
- (3) 회 부 일 : 2025. 9.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면세유”라 함)에 대하여는 석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등의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함)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농기계등의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어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시 임대 농기계 사용 농어민 포함(정희용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2제1항)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면제대상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u>사용</u> 하기 위한 석유류(제1호)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시 임대 농기계 사용 농어민 포함 ○ 면제대상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u>사용(임대 포함)</u> 하기 위한 석유류
☐ 면세유 공급 조건(제106조의2제3항) ○ 농기계등의 <u>보유</u>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 경영 사실 신고 ○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 변경사항은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신고	☐ 면세유 공급 조건 ○ 농기계등의 <u>보유(임대 포함)</u>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 경영 사실 신고 ○ 농기계등의 취득·양도·임대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 변경사항은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신고
☐ 면세유 사용 시 제출 서류(제106조의2제5항) ○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 <u>사용 실적</u> 등 서류를 조합에 제출(제1호) ○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 <u>생산 실적</u> 등 서류를 조합에 제출(제2호)	☐ 면세유 사용 시 제출 서류 ○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 <u>사용 실적, 임대 현황</u> 등 서류를 조합에 제출 ○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 <u>생산 실적, 임대 현황</u> 등 서류를 조합에 제출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임대한 농기계 등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희용의원안 2025. 9. 26. 발의(의안번호 13300)

□ 개정안은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 간접세 면제시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함)을 사용하는 농어민 외에 이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¹⁾

동 조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물의 생산기반 유지와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2년에 신설된 것으로, 당초에는 연근해어업용 선박 석유류의 부가가치세에만 적용하던 것을 1986년부터 농업용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임업용을 추가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 다른 간접세까지 확대 시행하였으며, 1998년 일몰제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일몰이 연장됨.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2년 1월 2일 한·미 FTA에 따른 추가 보완 대책으로서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3년 단위로 연장하되 향후 10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22년 이후에도 추가 연장이 이루어져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임.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 금액은 2022년 9,743억원, 2023년 8,802억원이고, 2024년 8,954억원이고, 2025년에는 9,846억원, 2026년에는 1조 104억원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세 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전망)
부가가치세	2,892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4,218
개별소비세	289	289	376	276	239	232	271	279
교통·에너지·환경세	7,547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4,697
교육세	1,175	1,243	1,169	794	739	780	886	910
소 계	11,903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10,104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그리고, 2024년도 기준 면세유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농기계, 어선, 임업 장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유가 1,626천kl로 면세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등유 340천kl, 휘발유 190천kl 순임.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단위: 천kl, %)

유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휘발유	211	202	201	194	189	190
경유	1,782	1,855	1,766	1,666	1,662	1,626
등유	42	44	38	34	20	19

유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윤활유	8.3	8.3	8.1	7.1	7.1	7.2
LPG	11	15	17	19	18	19
등유	446	442	440	422	349	340
부생연료유	-	-	-	-	28	26
합 계	2,500	2,567	2,472	2,344	2,274	2,228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농어민등이 사용하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시 농기계등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첫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제 대상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특히, 농가·어가·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최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어가·임가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농가·어가·임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19년	41,182	59.3	48,415	69.7	37,499	54.0	69,434
2020년	45,029	62.2	53,187	73.5	37,105	51.3	72,362

구분	농 가		어 가		임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소득(A)	비율(A/D)	소득(B)	비율(B/D)	소득(C)	비율(B/D)	
2021년	47,759	64.1	52,392	70.3	38,133	51.2	74,507
2022년	46,153	59.1	52,911	67.7	37,898	48.5	78,113
2023년	50,828	60.5	54,779	65.2	37,383	44.5	84,054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을 말함.

자료: 통계청(“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산림청(“임가경제조사”)

둘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을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들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농업·농촌이 직면한 고령화 및 공동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업 생산성 증가 둔화 등 농업 성장 정체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기계임대사업²⁾은 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인구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도 기능하고 있음.³⁾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등은 2021년 기준 88,888

2) 농기계임대사업은 1970년대 ‘기계계’로부터 유래되어 2000년대 이후 원예, 축산 등 발농사 기계화와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고성능 농기계 중심으로 농작업 기계화를 추진하는 정책사업임.

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우리동네 인기 만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소개합니다”, 2024.11.16.

- 2023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농기계는 97천여 대이고, 847천 명(중복이용자 포함)이 이용하였으며, 이들 농기계의 임대일수는 1,077천 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전국 농가인구의 40.6%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이는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농기계를 갖추고 전담인력 2,100여 명이 농기계 관리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어 농업인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 2022년 기준 93,765대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총 96,858대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3,093대(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해 기준, 전국 임대사업소(시·군 기준)는 평균 67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기계임대사업 용도별 농기계 수]

(단위: 대, %)

용도	농기계 수	비율
임대용	89,787	92.7
교육용	1,260	1.3
사업소관리용	1,200	1.2
예비농기계용	1,332	1.4
폐기대상	2,731	2.8
기타	548	0.6
합 계	96,858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결과보고서, 2024.12.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는 2023년 기준 평균 11.6일로, 전년 대비 0.3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가 대당 19.2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북 14.3일, 전남 12.9일, 전북 12.2일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2023년 기준 임대사업소를 이용한 농가 비율은 전국 평균 89.8%로 집계되었고, 지역별로는 전북이 140.7%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강원이 132.5%, 경북 98.9%, 충북 97.2%로 뒤를 이었음.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실적 및 이용 농가 실적]

(단위: 대, %)

구분	임대실적			이용 농가 실적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 비율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전국	12.4	11.3	11.6	83.8	85.2	89.8	
경기·강원	10.3	9.5	9.7	87.7	87.9	94.4	
	강원	9.6	8.4	9.1	122.6	126.0	132.5
	경기	11.6	11.3	10.6	63.0	64.6	68.0
충청	10.4	9.7	10.0	69.8	71.7	75.4	
	충북	10.3	10.3	10.4	84.0	87.5	97.2
	충남	10.5	9.4	9.7	62.0	62.6	63.0
영남	13.9	12.3	13.1	83.8	80.4	87.7	
	경북	15.2	13.8	14.3	96.6	92.7	98.9
	경남	12.0	10.1	11.4	65.0	62.8	70.6
호남·제주	13.8	12.7	12.7	91.4	101.8	100.5	
	전북	15.0	11.9	12.9	124.1	132.8	140.7
	전남	12.4	13.2	12.2	84.5	91.4	89.8
	제주	21.4	18.8	19.2	31.2	34.1	35.0

주1. 경기도에는 인천광역시, 충청도는 세종시, 경북은 대구, 경남에는 부산·울산. 전남은 광주광역시가 포함된 수치임.

주2. 이용 농가 수는 한 농가가 동일 농기계를 중복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결과보고서, 2024.12.

이와 같이 최근 농기계 등의 임대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농기계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어민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임대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농어촌 인구 감소와 농업 경영비 상승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어민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면세유 정책은 경유 기반 면세유 사용량이 많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므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ETS, Environmental Harmful Subsidy)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으로 면세유 지원 정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World Bank(2023)는 농·어업 분야에 지원되는 환경 유해 보조금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환경 친화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최소 2배 이상임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이고 비환경적인 재정 운영임을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은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쳐 경제의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

둘째, 현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10억원 이하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및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66조·제67조·제68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⁴⁾

[농업인등에 대한 조세정책]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식량작물재배업 비과세 · 10억원 이하 일반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69조	·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4)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는 개략적으로 32개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계·선박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의 구체적인 요건·범위는 농림부·해수부·산림청에 위임되어 있고, 임대 기계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 범위 확대는 현행 법령 하에서도 각 부처별 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